

파랑새노인건강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1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파랑새노인건강센터 (이하 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 운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돌봄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센터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센터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관지정) CCTV 설치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설치 운영책임관
 - 가. 책임관 : 원장 한성화
 - 나. 운영(담당)자 : 사무국장 이상욱, 관리인 최창립
2.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센터 CCTV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관과 운영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4. 책임관은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CCTV는 총 107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76대(생활실 53대, 거실 23대)
2. 공용공간 26대(강당 1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13대, 엘리베이터 3대, 기타 9대)
3. 외부공간 5대(진입로 4대, 주차장 1대)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 8호와 같은 안내판을 CCTV 설치장소에 부착한다.

③다음 각 호의 CCTV운영 장비는 센터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센터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촬영
3. CCTV 정보보유기간 : 60일 (보유기간 초과시 자동 삭제)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있는 PC

제8조(정보주체의 동의) 센터의 시설관리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장소 중 공용공간, 외부공간, 거실에 설치하는 CCTV에 대하여는 개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나, 각 생활실 내부의 CCTV에 대하여는 별첨 5호 서식에 따라 개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를 운영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9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0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의 원칙) ① 책임관은 열람 조치시 보호자 등이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입소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열람의 범위는 열람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 및 관련자가 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이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을 원할 경우 책임관은 열람 인원과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단, 열람주기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2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5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첨 제2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결한다.

⑥책임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별첨 제3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의 정정 및 삭제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하고 별첨 제4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첨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책임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센터 운영담당 직원으로 제한한다.

③책임관은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관리) ①책임관은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기록부

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사무의 위탁) ①책임관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 「개인정보보호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 월, 일, 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원내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CCTV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_____ (서명 또는 인)

파랑새노인건강센터 원장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오후)	열람장소	
통지내용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3항 .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파랑새노인건강센터 원장

[별첨 제3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p>「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파랑새노인건강센터 원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첨 제4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 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귀하 (주소 :)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정(삭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 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p>1.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파랑새노인건강센터 원장</p>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첨 제5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에 대한 동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5조 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CCTV)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돌봄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1대	요양원 내 · 외부
76대	생활실 내부 (확인 (인))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60일	원장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그 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따른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분쟁발생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연 락 처 :

동의 방법 : ☐ 대면 ☐ 전화 (전달일 : 년 월 일. 전달자 :)

파랑새노인건강센터 원장 귀하

[별첨 제6호 서식]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이용일시	요구자	파일명/형태	이용목적 / 사유	이용시간	이용장소	담당자 확인서명	비고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첨 제7호 서식]

CCTV영상물파일 삭제 · 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입소자 안전,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
촬영 시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소 설 치 장 범 위 [촬영]		생활실, 거실 및 복도, 식당, 강당, 출입구 등
책 임 관		파랑새노인건강센터 원장

210mm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